

참고1

2024년 기업 투자애로 지원 사례

A사 (건축허가 지원) 자연녹지지역 내에 위치한 의료용품 제조공장의 부대시설(창고 등) 증축을 추진하였으나, 「국토계획법」 등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식품공장 등만 건축이 가능하여 사업 추진이 곤란하였다. 📞 산업부는 업체 현장방문 과정에서 해당 기업이 첨단업종에 해당하는 제품(에피본드)도 생산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부대시설 증설이 가능하도록 지원(9.26, 건축허가 완료)하였다.

B사 (건축허가 지원) 의류·원단 제조공장의 부대시설(창고) 증설을 추진 중이나 「국토계획법」에 따라 해당 부지(계획관리지역)는 건폐율이 40%로 제한되어 애로가 발생하였다. 📞 산업부는 관련 지자체 방문·협의를 통해 부대시설 증설 필요성을 설명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 가능한 '가설건축물' 증설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완료하였다.

C사 (개발행위허가 지원) 건설 폐기물 재활용·판매사업 확대를 위해 사업부지 확장을 추진 하였으나 해당 지역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었다. 📞 산업부는 관련 지자체 협의 및 내부 검토 등을 통해 동 사안이 해당 지자체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준의 예외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주었다.

D사 (신속 인허가 지원) 현재 건설중인 가스열병합발전소 완공에 맞추어 천연가스를 공급받기 위해 00기지간 가스관 연결이 필요하나 관련 지자체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지연이 우려되었다. 📞 산업부는 해당 지자체 방문·협의 등의 통해 공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핵심 구간의 개발행위허가를 우선 승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E사 (신산업 지원) 셀프스토리지(공유창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의 용도별 건축물 종류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일부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을 근린생활시설에서 영업을 허용되지 않는 '창고시설'로 해석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려 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 과기부, 국토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24.4월, 과기부)을 통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F사 (산업단지 지원) 00 국가산단에 이차전지 소재(전해액 및 전해질 리튬염) 공장 신·증설을 추진중이나, 해당 부지(산업시설용지)는 생태면적률*을 10% 이상 확보해야 해 애로가 발생하였다. 📌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관련 법령(환경부 '생태면적률 적용지침')에서 정한 산업단지 전체 생태면적률 권장 달성목표인 20%가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 산업시설용지 생태면적률 기준을 5%로 완화(‘24.3월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국가산단 개발·실시계획' 변경)해 애로를 해소해 주었다.

* 생태면적률 : 개발면적 중 생태적·자연순환 기능이 있는 토양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G사 (각종 규제 완화) 00산업단지는 노후화 및 유희부지 부족 등으로 대(大)단위 발전시설의 추가 증설이 어려운 상황이고, 이에 따라 산단 내 입주기업들에 재생에너지전력거래제도 활성화를 추진하였으나 규정상 거래대상 및 용량 제한 등으로 인해 전기공급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 지자체 및 공단 입주기업들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적정 발전설비 용량을 재검토하였으며, 기존에 한전 등 전력거래소를 통해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던 것에서 기업들이 직접 전력구매계약할 수 있는 제도(PPA)를 도입함으로써 재생에너지 구매 폭을 넓히도록 규정을 개선하였다.

H사 (각종 규제 완화) 00사 00농공단지 증설 추진중에 공장 증설에 따른 폐수량 증가가 예상되어 폐수처리시설을 추가 건설하고자 하나 관련 법령에 의한 일평균 폐수배출량 제한으로 인해 공장 가동에 애로사항이 발생하였다. 📌 산업부 주도로 업체와 지자체, 지역 환경청 및 환경부가 포함된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일평균 폐수배출량 허용범위 확대가 포함된 개정안을 마련하고 환경부 고시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